

예 산 총 칙

2020년도 추경 2 회

제 1 조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468,926,872	14,067,806
일반회계	427,202,456	12,816,074
특별회계	41,724,416	1,251,732
기타특별회계	41,724,416	1,251,732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372,489	11,175
의료급여기금	282,483	8,474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	10,267,082	308,012
지하수관리	69,860	2,096
운서토지구획정리사업	116,977	3,509
기반시설	318,362	9,551
주차장	30,297,163	908,915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5,630,018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6,600,000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회계연도 중의 보조금, 교부금(세)은 예산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의회에 사후 보고한다.

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 상환금(차입금, 예수금) 상호간에는 이용할 수 있다.